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5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2
2. 부 칙	11
IV. 입법의 재정영향	13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u>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u> <u>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u> <u>경한 자</u> 2. <u>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u> <u>기간에 영업을 한 자</u>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u> <u>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u>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③ (생 략) 제21조(과태료) <신 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수산부산물 처리업²⁾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중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제외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행정상 명령 불이행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³⁾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경제형벌 합리화 정비 기준 >

- ① 법령입안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17개)에 속하는 경우
→ 원칙적 과태료 전환
- * 인허가, 신고, 보고, 행정상명령, 조사, 계획, 유사명칭, 교육, 강제보험, 게시, 보존, 통지, 인력배치, 인증, 검사, 표시, 토지출입 등
- ② 과태료 전환 시 원칙적으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 가벌성, 벌금-과태료 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 ③ 형사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유사입법례에 따라 과도한 수준 다소 완화하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자료 : 해양수산부

□ 개정안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3)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판례⁵⁾ 등에서 행정수단 가운데 행정형벌은 최후로 선택해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재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바.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영업 정지 6개월

5) 헌법재판소(2012.12.27., 2011헌바354)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는 결국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적 성격의 행정처분이 병과되고 있는 경우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도 제재적 성격을 지녀 헌법 제13조⁶⁾와의 관계에서 이중처벌로 보여질 우려도 있다는 의견⁷⁾도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9조제1항후단의 행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한 측면이 있음.

- 현행법의 행정청의 인허가 등에 관한 의무 위반 관련 벌칙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⁹⁾로 처하도록 규정

6)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7) 최환용,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5), p.27

제재는 본질적으로 부과된 의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야 하나, 다양한 제재수단을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중복하거나 병과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영업의 취소·정지 등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에 다른 간접적 강제수단도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헌법 제13조와의 관계에서 이중처벌로 보여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명확하며, 형벌을 일종의 보험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형벌과잉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하고 있음.

현행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산부산물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수산자원 효율화라는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체적 위반행위인 반면,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행정청의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비협조로서 입법목적에 침해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20조제2항제1호를 미허가 영업행위 등과 같은 행정형벌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¹⁰⁾.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5년간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벌칙 적용 건수가 전무한 점을 고려하면, 3천만원의 벌금형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법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10)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보관시설 장소 변경, 운반장비 교체 등 허가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변경으로 보이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6호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이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대한 사항의 변경허가 처벌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에서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설정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사회적 영향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종전 벌금형 상한 3천만원을 3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무허가 영업행위 등의 벌금형 상한이 5천만원인 점, 제재의 실효성 유지 및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위 위반과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변경허가¹¹⁾의 경우 수산부산물 보관시설·장소, 운반·처리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반면, 변경신고¹²⁾는 허가받은 사항 중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성명·주소·연락처·사무실소재지 등 경미한

1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또는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 다. 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 다. 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1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2. 수산부산물처리업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주소·연락처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사항에 대해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 사항의 중요 정도와 제재의 실효성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과태료 전환 시 그 상한을 현행 벌금금액과 같은 수준인 3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행정처분을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과도한 형벌보다는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실질적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도 형벌 부담은 경감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제외한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³⁾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⁴⁾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⁵⁾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3)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5)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⁶⁾.

문 의 처
02)6788-5419

1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참고 2

유사입법례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
 - 가.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자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자
 -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이하 생략)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16. (생략)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이하 생략)

「축산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